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652

제출년월일 : 2011년 6월 일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제천시 수도급수조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 감면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정수 처분 시 유예기간을 두어 저소득층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급수 정수 후 개전할 시 체납요금을 완납한 후 개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어 수도요금 징수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요금 감면 등 (안 제37조)

○ 정수 처분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이를 유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(안 제39조)

○ 급수 정지 후 개전 시 체납요금을 완납한 후 해제(안 제39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기타참고 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나. 입법예고기간 : 2011 4. 15. ~ 5. 5. (20일간)

다. 2011년도 제7회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결과 : 원안가결

5. 관계법령 : 붙임

첨 부 **1.** 의안전문 1부.
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
3. 관련법령 1부.

4.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.

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.

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및 체납요금을 징수 한 후 해제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	제37조(요금등의 감면)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~7. (생략)	1.~7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8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.
8.(생략)	9.(현행 제8호와 같음)
제39조(정수처분)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. <단서신설>	제39조(정수처분) ① ----------.다만,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.	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및 체납요금을 징수 한 후 해제 하여야 한다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[관계법령]

수도법

[법률 제9401호]

제38조 (공급규정)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,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,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(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제65조에서 같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법

[법률 제8852호]

제136조 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7조 (수수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9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.

제140조 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③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.

⑤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

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법」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지방공기업법

[법률 제8852호]

제22조 (요금)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<개정 1992·12·8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,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,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1980·1·4, 1992·12·8>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2.3.25>

④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[대통령령 제20919호]

제18조 (요금의 산정방식)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. <개정 2002.6.19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천시 공고 제2011-205 호

「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4월 15일

제 천 시 장

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조례명 :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함.

○ 정수 처분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이를 유예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○ 급수 정지 후 개전할시 체납요금을 완납 한 후 개전할 수 있게 하여 수도요금 징수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요금의 감면 등 (안 제37조)

○ 정수 처분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이를 유예 할수 있는 방안 마련(안 제39조)

○ 급수 정지 후 개전시 체납요금을 완납한 후 해제 (안 제39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1년 월 일까지 제천시장(참조 수도사업소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연락처 043-641-4228, FAX : 043-641-4259 담당자 : 신인수

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○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
○ 기타 참고 사항 등

★실무관	급수팀장	수도사업소장			
신인수	황규원	06/01 김기덕			

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

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공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1. 입법예고 조례명 : 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
2. 공고번호 : 제천시공고 제2011-205호
3. 공고기간 : 2011.4.15.~5. 5.(20일)
4. 공고매체 : 제천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(입법예고)
5. 공고내용 : 별도붙임
6. 공고결과
   - ○ 조회수 : 75명
   - ○ 의견제시자 : 없음

붙임 : 공고안 1부.(별지) 끝.